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3조제1항 중 “단종보험설계사 및 단종보험대리점(이하 “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”이라 한다)“을 “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(이하 “간단보험대리점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제4-4조의2 제목 중 “단종손해보험대리점”을 “간단손해보험대리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본문 중 “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의”를 “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”로 하고, “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의 본업과 관련된”을 “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·제공·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”으로 한다.

제4-5조제3항 중 “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”을 “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”으로 하고, 제4-6조제2항 중 “영 제32조제5호에서”를 “영 제32조제1항제5호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의 “단종손해보험대리점”을 “간단손해보험대리점”으로 한다.

제4-9조제3항 중 “영 제32조제4호”를 “영 제32조제1항제4호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-4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-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,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

제7-45조의2제1항 중 “상품요약서”를 “보험증권, 상품요약서”로 한다.

제7-73조제2항 중 “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”를 “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-4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-3조(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) ①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"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"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<u>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</u>(이하 "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4-4조의2(<u>단종손해보험대리점</u> 등의 영업범위) 영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및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<u>단종손해보험대리점</u> 등의 영업범위는 <u>단종손해보험대리점</u> 등의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4-5조(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4-3조(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</u>(이하 "<u>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</u>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-4조의2(<u>간단손해보험대리점</u> 등의 영업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간단손해보험대리점</u> 등의 ----- ----- <u>간단손해보험대리점</u> 등을 통해 판매·제공·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----- -----.</p> <p>제4-5조(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